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731

발의연월일: 2021. 4. 27.

발 의 자 : 윤주경 · 강대식 · 권명호

김민기 · 김병기 · 김병주

김상훈 · 김희국 · 박성민

박수영 · 서병수 · 신원식

안규백 • 유의동 • 윤창현

이채익 • 전주혜 • 조명희

하태경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 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

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을 "거부·정지·제한·예방·대비·대응·복구·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대응"을 "대응 및 복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대응체계"를 "침해대응 및 복구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대비하기"를 "대비하고 침해된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체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방정보보호"란 국방정보	6
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	
행위의 거부ㆍ정지ㆍ제한ㆍ	<u>거부·정지·제한·</u>
예방 • 확인 • 점검 • 역추적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 확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u> 등</u>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u>대</u>	제21조(국방정보침해에 대한 <u>대</u>
<u>응</u>)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	응 및 복구) ①
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u>침해대응체계</u> (이하	<u>침해대응 및</u>
이조에서 "국방정보보호대응체	<u>복구체계</u>
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에	3
대한 침해에 <u>대비하기</u> 위하여	<u>대비하고 침해된</u>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	국방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침해된 국방정보 및 정보체
	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
	책개발, 평가, 기술개발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